

<p>.....</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의2제1호중 “교통카드의 판독기, 하차 시간입력기 등”을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입력기 등”으로 한다.</p> <p>안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으로 한다.</p> <p>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마을버스”라 함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제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p> <p>3.“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제2조제1항제4호중 “제15조제1항나목”을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5조제1항다목”을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과 시행규칙”</p>	<p>을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제1호중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p> <p>제3장의 제목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p> <p>제8조의 제목 “(한정면허의 기본원칙)”을 “(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으로 한다.</p> <p>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8조의2(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유차고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효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p>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8조의3(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기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	--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를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과 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수정안(빈안)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의결주문중 “외국인투자유치사업율”을 “투자유치사업율”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를 “국내·외투자기업에”로 한다.
 안 별첨 처분(매각)대상재산목록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로 하고, 동목록 매수희망자 주소·성명란중 “지명경쟁입찰”을 각각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여의도와 구 한남동면허시험장부지인 시유지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사업을 촉진하고자 국내·외 투자기업에 매각하며, 일반상업용지를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목록:별첨)
 - 시유지 매각 3건 : 10필지 36,249.3㎡(10,965평)

(다음 페이지에 계속)